

【 2017.12.13(수) 강원일보 】

강원 SOC 발목잡던 예타조사 개선 추진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

한국당 이철우 의원 법안 발의

도내 SOC 확충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방식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될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국회의원은 예타조사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예타는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각 지역의 특성을 두시한 채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라는 지적 많았다. 경제성 중심의 비용/편익

(B/C) 분석에 매몰되면서 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지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현재 예타 운용 지침에 규정돼 있는 25~35%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40~4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 현안인 제2경춘국도, 제천~삼척 고속도로 사업 등 신규 SOC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춘천~속초 고속철도는 경제성 분석에서 0.79로 사업 추진 기준인 1에 못 미쳤다. 하지만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적 판단을 종합한 AHP 분석을 통해 사업이 확정됐다. 이성현기자

올림픽경기장 사업비 8000억 넘어

8곳 중 6곳 신설 2곳 보완 공사

5년전 예산보다 1100억 증가

IOC 요구 수용·사후 고려 영향

3곳 공기 단축·비용절감 실현

평창올림픽을 위해 신설·보완된 올림픽 경기장 8곳의 총사업비가 5년 전 당초 사업비 보다 1100억원 가까이 증가,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달 말 문체부와의 4차 조정을 끝으로 경기장 총사업비 규모가 최종 확정된다.

경기장 8곳의 총사업비는 이달 말 기준으로 8076억 1100만원으로 최초 책정 사업비(6992억 9200만원)보다 1083억

1900만원 증가했다.

경기장 8곳 중 정선 알파인경기장, 슬라이딩 센터 등 6곳이 신설됐고 관동 하키센터와 강릉 컬링센터 등 2곳은 보완 시설이다.

알파인경기장은 당초 1094억 8700만 원에서 1925억 8600만원으로 확정, 830억 9900만원이 증가했다. 증가 요인은 문화재 조사, 생태계보존협력금 등 법 정경비 반영과 경기장 안전시설 보강 등이다. 보광 스노경기장은 처음(205억 200만원)보다 358억 800만원이 늘어 563억 1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스키연맹(FI S) 요구에 따른 경기장 설비와 사후환경 등을 고려한 법정경비 반영 등의 요인이 발생했다.

보완시설인 강릉 컬링센터는 당초 사업비(93억 5800만원)보다 40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200만원, 신설 경기장인 강릉 하키센터는 당초(1078억 5600만원)보다 13억 7800만원이 늘어난 1092억 3400만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관동 하키센터는 621억 8000만원으로 확정, 1억 1500만원 증가했다.

반면 루지와 블슬레이, 스켈레톤 종목이 진행되는 슬라이딩 센터는 84억 1300만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완공된 슬라이딩 센터는 자동화 공법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해 30개 월이 소요되는 트랙공기를 12개월 만에 단축했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1263억 200만원)은 존치가 결정되면서 사업비가 57억원이 증가했으나 실시설계 반영 등 비용절감을 시도, 48억 4100만원 감소했다. 강릉 아이스아레나도 28억 7100만원을 줄여 최종 1332억 2600만원으로 확정됐다. 박지은

■ 올림픽 경기장 8곳 총사업비 증감액

정선 알파인 경기장

830 억 9900 만

(최초) ▶ 1094억 8700만 (변경)



보광 스노 경기장 **358 억 800 만**

205억 200만 ▶ 563억 1000만



관동 하키 센터

1억 1500만

620억 6500만

▼

621억 8000만

강릉 하키 센터

13억 7800만

1078억 ▶ 1092억

5600만 ▶ 3400만

강릉 컬링 센터

40 억 4400 만

93억 5800만

▼

134억 200만



강릉 아이스 아레나

- 28억 7100만

1360억 ▶ 1332억

9700만 ▶ 2600만



슬라이딩 센터
- 84억 1300만

1227억 ▶ 1143억
8400만 ▶ 7100만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 48억 4100만

1311억 ▶ 1263억
4300만 ▶ 200만

강릉 아이스 아레나
- 28억 7100만

1360억 ▶ 1332억
9700만 ▶ 2600만

公共공사 임금체불 차단 발주가가 직접 지급한다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 발표

2년간 건설현장 20곳 대상

'임금보장제' 시범사업 추진

'적정공사비' 확보 선행 관건

건설기계 운전 1인 사업자

퇴직공제 가입도 허용키로

이르면 이달부터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전면 적용되고, 내년 중에는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된다.

또 내년부터 2년간 건설현장 20곳에 대해 당초 발주자가 책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적정 공사비 확보 여부가 실효성의 열쇠로 떠오를 전망이다.

▶관련기사 2·3면

정부는 12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10대 세부과제로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적정임금제 추진 △건설근로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 강화 △설계·엔지니어링 일자리 질 개선 △기능인등급제 도입 △경력관리 기반구축 △건설인력 양성체계 확립 △불법 외국인력 퇴출 노무관리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경남기자 knp@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는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1단계로 국토부 및 산하 공공 기관 현장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 중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한다.

발주자가 정한 임금을 사감하지 않고 지금 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는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 검증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부터 2년

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대 기관의 종합심사나찰제 현장 10곳, 적격심사나찰제 현장 10곳 등 총 2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건설 근로자법 등의 개정을 거쳐 2020년부터 적정임금제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에 대해 퇴직공제 가입을 허용하고 하도급자가 노동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원도급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노무관리 평가제'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 고용우수 건설업체 인센티브 강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을 명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 반영된 과제들이 연착륙하면서 적정공사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적정공사비의 확보 수단으로 건설공사 원가산정기준 개선, 발주제도 개선, 적정 사회보험료 확보 방안 마련, 공공기관 부당특약 시정 등을 제시한 만큼 적정공사비 확보 여부에 따라 일자리 개선대책의 효과를 기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정공사비 확보 일자리 창출 방안 추진

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 방식 손질 고용 우수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우대

정부는 이런 '건설사업 일자리 개선대책'이 제대로 가동되면 임금과 대금 등이 건설산업 생산체계상 최하위 계층에 있는 건설근로자 등에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회보험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수립하고, 물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대가 없이 추가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간접 틀이 확실하게 잡힌 이후에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적정 수준의 임금과 대금 이 아래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국토부와 기재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하반기 중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표준시장단가 등 건설공사 원가

산정기준을 손질해 현실적인 원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지나친 가격경쟁에 따른 저가낙찰로 공사비가 하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주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회보험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수립하고, 물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대가 없이 추가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간접 틀이 확실하게 잡힌 이후에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적정 수준의 임금과 대금 이 아래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국토부와 기재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하반기 중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표준시장단가 등 건설공사 원가

제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등 고용 실태를 향상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시공능력평가 등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우량 중소업체에 대해서 선전 건설사로 부터 시공관리나 공법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 비우자를 지원한다.

내년 1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을 주도한다.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업역구제 완화,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역량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데, 정부는 이를 과제를 통해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남기자 knp@

【 2017.12.13(수) 건설경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제작국회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건설경제

“노무비 비경쟁 방식 적정임금제, 저가낙찰 유도 우려”

업계 반응은

원도급사 자금집행만 통제하는

임금직접지급제에 불만 목소리

하도급자 노동관련 법 위반때

원도급사에도 불이익 함께 주는

노무관리 평가제도도 큰 부담

적정공사비 확보 포함됐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은 보완 필요

‘노무비 비경쟁 방식’은 건설사들의 저가 낙찰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재정부답도 골칫거리다. 공공공사에 전면 도입하면 연간 2조원 이상의 추가 공사비가 들고 시중노임단가 체계도 재설계해야 한다. 시범사업에서 각종 문제가 제기돼 원래 제도로 돌아오거나 기형적인 제도로 바뀌는식의 시행착오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프리비 일링 웨이지(PW)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지만 한국은 건설환경이 다르다”며 “적정임금 적용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입찰금액에 반영하는 시스템과 문화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관리 분야에서 하도급자의 노동관련 법위반행위 발생 시 원도급업체에도 불이익을 주는 ‘노무관리 평가제’ 역시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는 정책으로 꼽힌다. 현실적으로 하도급자의 불법행위까지 원도급사의 과실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이 많다.

정부는 이처럼 건설근로자들의 즉각적인 고용여건 개선 정책을 쏟아낸 반면, 건설업계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 말미에는 건설업계의 숙원인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이 포함됐다.

표준시장단가 등 건설공사 원가산정기준 개선, 저가낙찰방지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 및 사회보험료 확보방안 마련, 공공기관 부당특약 시정 등 내용만 보면 건설업계의 의견이 대거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년 2월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하반기에 방안을 확정한다는 것 외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

건설산업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양적 감소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년 정부 SOC예산이 올해보다 3조1000억원(14.2%) 감소하면서 건설 일자리도 4만3000명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정부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기대보다 우려의 시각이 높다. ‘질 좋은 건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에선 시각차가 컸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및 안전 대책의 대부분이 발주자인 공공기관보다 원도급사인 건설사에 주로 책임을 떠넘기는 흐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공사의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건설사를 안 거치고 직접 지급하는 ‘임금직접지급제’만 해도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하도급사를 놔두고 원도급사의 자금집행을 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신규 공사 외에 기존 공사의 기성금 지급 방식까지 중간에 바꾸는 것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이 한두 곳도 아니고 수백곳의 대금지급시스템을 한꺼번에 바꾸려면 혼란이 클 것”이라며 “무엇보다 대형사의 자금집행 사이클이 형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년간 시범사업 후 2020년 본격 도입 예정인 적정임금제도 논란거리다. 내년 10곳, 내후년 10곳 등 20여곳에 도입예정인 시범사업 방식은 크게 2가지(노무비 경쟁-비경쟁 방식)다. 특히 낙찰률에서 노무비를 빼는

구조조정 공포를 이기자 ⑦ 하수급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하려면
관련한 3자간 계약 체결하는 것이 확실

하도급업체의 도산에 따른 하수급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각각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우선,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 여러 경우 중 하나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를 인정하고 있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도 그와 유사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

각각의 법률에서는 하수급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 도산의 유형으로 파산만 열거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하도급업체의 회사정리절차(과거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도산 절차로서 현행 법령상 회생절차에 해당함)의 개시를 이유로도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이후에는 하도급업체의 회생절차 개시의 경우에도 하수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실무상으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처럼 법률로 문언상 요구되는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은 (1) 하도급업체의 도산(파산 또는 회생)과 (2) 하수급업체의 청구뿐이지만,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발주자는 하수급업체에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범위에서 하도급업체에 부담하는 공사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하수급업체는 자신이 시공했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그리고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을 지급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하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업체가 주장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은 소멸하지 않아 이중변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와 협의해 하수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현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하도급업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아예 하도급업체 및 하수급업체와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대한 3자간 계약을 체결해 그에 근거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확실할 것이다.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도 3자간 계약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또한, 발주자는 하수급업체가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된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나 가압류된 상태인지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라면 법령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채무는 계속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최진석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社說

건설업 일자리 대책, 적정공사비 반영이 먼저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개선 대책은 제불방지와 균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공공공사 발주자의 대금지급관리 시스템 전면 확대, 임금 지급보증제 도입, 적정 임금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이 그동안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고용안정 방안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의 균로조건을 개선하는 게 이번 대책의 풀짜다.

하지만 이쉬운 점은 건설업체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대책이다 보니 건설업체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동안 건설산업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숙련건설인력 육성을 위해 체불 해소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제고, 균로환경 개선, 직업 전망 제시 등을 막라하는 종합적이고 본질적 처방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 모토로 삼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건설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건설업은 작년 기준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다. 전체 취업 인원의 7%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어서 산업 전반의 고용안정성은 낮은 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건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 정규직의 채용 확대 등 고용실태를 평가해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에서 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중요하다. 업계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건설공사비 부분이다.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정공사비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적정 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돼 근로자에게도 적정 임금이 지급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건설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만 주는 정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건설업체 역시 균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작업 안전은 물론, 탈의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건설현장이 3D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숙련인력 확보 기반 마련

기능인등급 도입… 건설업 등록기준에 반영

건설산업의 생산기반 구축,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직결되는 숙련인력 확보도 이번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우선 정부는 건설근로자가 경력 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보험공단, 인력관리공단 등으로 분산된 건설근로자 정보를 공제회로 일원화하고 경력, 자격, 훈련정도 등을 반영한 직종별 등급분류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때 경력이 짧더라도 수준 높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기능인등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시공능력평가 등에 기능인등급제를 반영해 우수기능인력의 정규직 채용 등 고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기술자 보유만 의무화돼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경우 기능인 보유를 추가하고 기술자 배치만 인정하고 있는 현장배치 기술자 기준은 기능인 배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경력관리를 체계화하면서 부조리 방지 기능을 갖춘 '전자카드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300억원 이상 신규 발주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2019년 이후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카드제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말기 설치비용 등을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훈련 체계는 건설업체 차원에서 주

도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인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거점훈련기관 1곳을 선정하고 운영실적을 살펴가며 다른 권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기능 향상 훈련 규모도 8000명에서 1만2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종 혼합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산업에서 내국인의 일자리를 잡식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력을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중단속기간을 연 20주에서 22주로 연장하고 단속 참여기관과 인원을 4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불법 외국인력 퇴출에 단속의 초점을 맞출 경우 현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합법 체류자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원·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특히 정부는 하도급자의 노동 관련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원도급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노무관리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도급자 행정처분에 대해 원도급업체에 구제사유가 있을 경우 별점을 부과하고 별점이 누적되면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으로 처분을 강화한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고 원도급업체의 관리소홀이 드러날 경우 원도급업체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관리소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만큼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도급업체도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는 등 법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공공공사 하도급을 2년간 금지한다.

박경남기자